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

정부지원 종합 안내서

2022. 4.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목 차

1. 사유시설 피해 지원(재난지원금) 1
2. 이재민 구호 지원2① 의연금 지원2② 재해구호물품 지원3③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5④ 공공임대 주거 지원7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·정서 지원8
3. 일반피해지역 지원9① 재해 복구자금 융자10② 국세 납세유예 / ③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14④ 재해손실 공제15⑤ 국민연금 납부예외 / ⑥ 상하수도요금 감면16⑦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7⑧ 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18⑨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19⑩ 과태료 징수유예 / ⑪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20⑫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21⑬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22⑭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23⑮ 농기계 수리 지원24⑯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25
4.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26① 건강보험료 감면 / ②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27③ 고용·산재 보험료 경감28④ 전기요금 감면 / ⑤ 도시가스 요금 감면29⑥ 지역난방요금 감면30⑦ 통신요금 감면31⑧ 전파사용료 감면 / ⑨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32⑩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/⑪ TV수신료 면제33⑫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34 5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1 사유시설 피해 지원(재난지원금)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
- ○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○「재해구호법」제14조

□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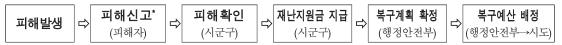
- ① 세대주·세대원 중 사망·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
 - 사망·실종 : 2,000만원
 - 부상 : 장해등급 1~7급 1,000만원, 8~14급 500만원
- ② 주택피해(전파·유실, 반파, 침수피해)를 입은 경우
 - 주택전파·유실 1,600만원, 반파 800만원, 침수 200만원, 소파 100만원(지진피해)
 - *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(1인당 전파 480천원, 반파 240천원, 침수 56천원) 및 주택 전파(유실),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지원
-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 - * 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- ※ 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∙어가 생계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

< 생계지원비 지원 > (원/월)

가-	구구	성원	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	원	금	액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
- *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- ④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·전파·반파·침수·소파(지진피해에 한정)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구호금 최대 200만원 지원(지자체 재난기금)

□ 지원 절차



*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자연재난 피해신고서」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(읍면동) 담당부서에 제출 (인명피해는 주소지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)

2 이재민 구호 지원

2-① 의연금 지원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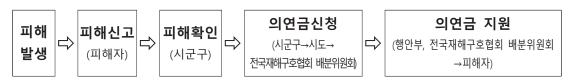
- ○「재해구호법」제26조
- ○「의연금품 관리·운영 규정」

□ 지원 내용

대 상	의연금 (만원) * 상한액	비고
○ 사망·실종자의 유족	1,000	
○ 부상자(장해등급 1~14급)		
- 1~7급	500	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
- 8~14급	250	따른 신체장해등급 기준
○ 생계지원		
- 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	100	세대당 지급
50%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		
○ 주택파손(동) : 실거주 대상		
- 전파	500	세대당 지급
- 반파	250	세대당 지급
- 침수, 지진소파	100	세대당 지급

[※] 배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

□ 지원 절차



※ 지원대상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

2-② 재해구호물품 지원

□ 근거 법령

○「재해구호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□ 지원 내용

- 응급구호세트(시각장애인용 포함) : 남·여 개인별 1세트
- 취사구호세트: 1세대 1세트
 - ※ 1세대는 4인 기준으로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

주택피해 세부지급 기준

-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·유실·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구호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
- 지자체장이 취사 또는 주거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
-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활필수품(분유세트, 기저귀, 모기약 등) 지급 가능

□ 지원 절차

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인 때라도 지체없이 구호물자지급 (시군구, 수령확인)

NDMS 시스템 입력

(재해구호상황보고서 및 구호물자 관리)

※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 지급 후 NDMS를 활용하여 관리 철저

참고 이재민 구호물품 현황

응급구호세트(남자 1인 기준)



품 명	규 격	수 량
담요	200cmX150cm, 1.3kg, 200cmX150cm, 0.7kg	 2장
- · 칫솔	일반용	1개
▶세면비누	100g	1개
수건	80cmX40cm	2장
▶화장지	미용티슈	1개
베개	PVC, 38cmX28cmX10cm	1개
면장갑	반코팅	1켤레
간소복	면폴리 혼방(대105,중100,소95)	1벌
속내의	면(대105,중100,소95)	2벌
양말	면	2켤레
바닥용매트	70cmX200cm(우레탄,방수)	1개
슬리퍼	대, 중, 소	1족
안대	-	1개
▶면도기	1회용	1개
▶귀마개	-	1개
*개별구호물품	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리터)	

응급구호세트(여자 1인 기준)



품 명	규 격	수 량
담요	200cmX150cm, 1.3kg, 200cmX150cm, 0.7kg	2장
▶칫솔	일반용	1개
▶세면비누	100g	1개
수건	80cmX40cm	2장
▶화장지	미용티슈	1개
베개	PVC, 38cmX28cmX10cm	1개
면장갑	반코팅	1켤레
간소복	면폴리 혼방(대100,중95,소90)	1벌
속내의	면(대100,중95,소90)	2벌
양말	면	2켤레
바닥용매트	70cmX200cm(우레탄,방수)	1개
슬리퍼	대, 중, 소	1족
안대	-	1개
▶귀마개	-	1개
*개별구호물품	치약(130g),물티슈(60매),생수(1리터),생리대 (일	반중형)1조

취사구호세트(1세대 4인 기준)



품 명	규 격	수량
가스렌지	휴대용	1개
코펠, 수저	4인용	1세트
세탁비누	230g	1개
세탁세제	1kg	1개
주방세제	500g	1통
고무장갑	고급형	1켤레
수세미	부직포	2개
다용도 가방	PE타포린	1개
*개별구호물품	1세대당 쌀(10kg) 1포, 부식류(고추장, 간장, 된 부탄가스 4개, 살균 표백제 1개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※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(응급구호세트) 비축: 구호물자에(비축기준 10%) [©]점자표기, [©]음성안나(QR코드), [©]안내지팡이 추가 * 박스 겉면에 물품목록, 개별 "▶" 표시 품목 5개(칫솔, 세면비누, 화장지, 면도기, 귀마개) 명칭

2-③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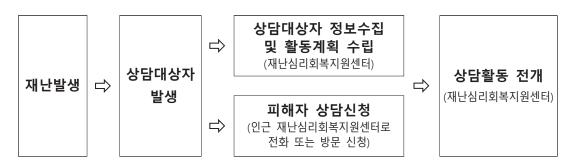
□ 근거 법령

- ○「재해구호법」제4조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

□ 지원 내용

- (대상)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※ 유가족,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, 수습복구활동 참여자 등 재난 간접피해자 포함
- (내용)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TSD)를 발굴하여 진료기관에 연계*하여 정신적·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정신·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보건·의료분야로 인계

□ 지원 절차



※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

참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

연번	센 터 명	 연 락 처	주 소
선민	센 더 링	선 탁 시	·
1	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2-2181-3107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긴급구호종합센터 재난안전교육팀
2	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1-801-407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보건안전교육팀
3	대구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3-550-7117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4	인천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2-810-1341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5	광주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2-570-7725	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1층 구호복지팀
6	대전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33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·세종지사
7	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2-210-9521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
8	세종특별자치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2-220-0134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·세종지사
9	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1-230-1624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
10	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33-253-1295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RCY본부
11	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3-262-7114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RCY본부
12	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41-640-4845	층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구호복지팀
13	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3-280-5838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구호복지팀
14	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1-272-2807	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220번길 7-3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목포봉사관
15	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54-830-0746	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구호봉사팀
16	경상남도 재난심리지원센터	055-278-2725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구호복지팀
17	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	064-758-3506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

※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(044-205-5342) 및 시·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

2-④ 공공임대 주거 지원

<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.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운영부 >

□ 근거 법령

○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3조의3

□ 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임시사용 ※ LH 보유 공가는 무보증금 및 월임대료 50% 감면
- 지원혜택 :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주(최소 6개월) ※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
- 근거법령: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3조의3



2-(5)

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

<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>

□ 근거 법령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21조의2, 3, 4

□ 지원 대상

- 지원대상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·양육 등 지원이 필요한 자
 - ※ 전국의 221개의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93개소에서 서비스 제공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
 - 가족돌봄, 가사돌봄, 동행서비스 등 생활도움서비스
 - 가족상담, 집단프로그램,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·정서 지원
- 지원혜택 :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·정서 지원에 필요한 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 - ex) '22년 기준, 위기가족 가구당 1,000,000원 이내의 서비스 지원(가구 내 지원 대상이 3인 이상인 경우, 지원한도의 150%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)
- 지원기간 : 6주~3개월

□ 지원 절차

3 | 일반피해지역 지원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
-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12조
 - * 피해신고만으로 '재난지원금'을 포함한 '세제·융자 등 간접지원'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통합 일괄 지원

□ 지원 내용

- (대상)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
- **(항목)** 간접지원 18개 분야

<일반재난지역>

- ① 재해 복구자금 융자 ② 국세 납세유예
- ③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

- ④ 재해손실 공제
- ⑤ 국민연금 납부예외 ⑥ 상하수도요금 감면
- ⑦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
- ⑧ 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- ⑨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

- ⑩ 과태료 징수 유예
- ①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 ②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- ③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- ④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⑤ 농기계 수리지원

- ⑩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
- ① 공공임대 주거 지원
- ®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

□ 지원 절차

○ 해당 시·군·구에 피해신고, 가접지워 시행 기관에 신청

3-① 재해 복구자금 융자

<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,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,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,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,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·소상공인정책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
- ○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제4조
- ○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
- 「산림사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」제3조,「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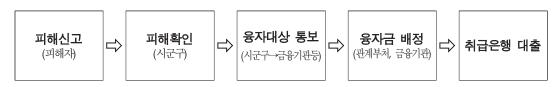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 내용

○ 자연재난으로 주택, 농어업 분야 생물·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자

소관부처	피해시설	취급은행	상환기간	대출한도	이율 (고정금리)
농림축산식품부	농경지, 농작물등	성	5년 거치 10년 상환	복구지원 부담률*에 따른 융자액 *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	연리 1.5%
해양수산부	어선, 수산생물 등	수협	5년 거치 10년 상환	대출 가용한도 內 개인·법인 신용 고려	연리 1.5%
산림청	산림작물, 시설 등	산림조합	5년 거치 10년 상환	대출 가용한도 內 복구 단가, 개인법인 신용 고려	연리 1.5%
국토교통부	주택(전파,유실,반파)	우리은행	3년 거치 17년 상환	· 주택구입 (일반 3,120만원 특별 8,320만원) · 신축 및 개량 (주택구입과 한도 동일하나, 내진설계시 일반 3640만원, 특별 8,840만원)	연리 1.5%
ᄌᆺᆐᅯᆌᅅᆸ	소상공인 (긴급경영안정자금)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업체당 7천만원	연리 2.0%
중소벤처기업부	중소기업 (긴급경영안정자금)	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2년 거치 3년 상환	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이내)	연리 1.9%

[※] 재해복구(주택, 비닐하우스) 융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·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 (상환기간까지 유지), 개인·법인 신용한도 고려하여 융자금 한도가 다를 수 있음.

□ 지워 절차



참고1 재해 농가이가임가 경영자금 지원(별도)

□ 근거 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63조, 「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」, 「축산법」제3조, 「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」
- ○「수산업법」제86조,「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지침」, 「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」

□ 지원 대상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「자연재해대책법」,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른 피해 농·어가

소관부처	지 원 내 용	상환조건		
エゼナベ	시 원 내 중	상환기간	이율	
농림축산 식품부	(재해대책경영자금)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	1년간 (1년 연장 가능*) *다만,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과수농가는3년연장/능		
해양수산부	피해금액 20% 이내, 영어자금 소요액 20% 이내 (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)	1년 (최대 2년 연장 기능)	연 1.8% 또는 변동금리	
산림청	(재해대책경영자금) 청장이 결정한 금액이내 ※ 한가구당 20백만원 한도	2년이내 (2년 연장 가능)	연 1.8% 또는 변동금리	



참고2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
- ○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
- ○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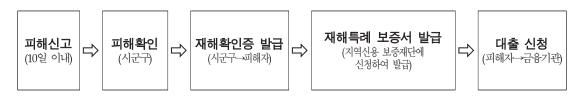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 대상

- 재난·재해로 직접 피해^{*}를 입은 재해 확인증 발급을 받은 소상공인
 - *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□ 융자 조건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7천만원
- 대출금리 : 연 2.0% 고정금리(매년변동)
 - ※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. 수수료 0.5%) /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.1%

□ 지원 절차



*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

참고3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1조
- ○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
- ○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

□ 지원 대상

- 재난·재해로 직접 피해^{*}를 입은 재해 확인증 발급을 받은 중소기업
 - * 재해로 인한 건축물, 생산설비, 원재료, 완제품 피해에 한함

□ 지원 내용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
- 대출금리 : 연 1.9% 고정금리(매년변동)



3-23

국세 납세유예 /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

<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, 국세청 징세과 > <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국세기본법」제6조,「국세징수법」제13조
- ○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,「지방세징수법」제25조 및 제105조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및 제92조

□ 지원내용

- [국세 납세유예]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
 - ▶ (신고·기한연장) 신고·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·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연장
 - ► (징수유예)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연장
 - ▶ (체납처분 유예)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)까지 유예
- [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] 재난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 납기를 연장하거나,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
 - ▶ (납세유예)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 유예로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)까지 납부기한 연장
 - ► (체납처분 유예)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장 1년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)까지 유예
 - ▶ (감면) 멸실·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,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



재해손실 공제

<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>

□ 근거 법령

○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

□ 지원 대상

○ 자연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자연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
- 지원혜택 :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가 가능함을 관계 부처에 통보
- 근거법령: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

□ 지원 절차



(피해자) (지방병무청) (지방병무청)

3-⑤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/ 상하수도요금 감면

<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> < 환경부 물이용기획과·생활하수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국민연금법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- ○「수도법」제38조,「하수도법」제65조,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

□ 지원 내용

○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▶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※ 최장 12개월 보험료 납부 면제(면제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음)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

- ▶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
- ▶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지원, 전액면제 등 시·군·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
 - ※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

□ 지워 절차



3-(7)

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<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>

□ 근거 법령

○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3조

□ 지원 대상

○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- 지원혜택 :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수수료 50% 감면 ex) 경계복원(300㎡) 측량(283,000원) 시 283,000원×50%=141,500원 감면



3-8 국-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<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,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,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>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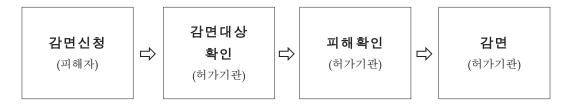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4조 및 제34조
- ○「국유재산법」제34조, 제47조
- ○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

□ 지원 내용

○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- ▶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*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 - *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한파, 폭염, 지진 등

구 분	공유재산 및 물품	국유재산	국유림
허가·대부기간	。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 연장	-	-
사용료·대부료	。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·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	。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	。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



3-9

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

<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.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>

□ 근거 법령

○ 「농어촌공사법」제24조의3

□ 지원 대상

- 지원대상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자연재해^{*} 피해를 입은 경영 회생지원사업 지원농가 중 지원필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^{**}
 - *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
 - ** 다중피해인 경우 농가 단위 피해율중 가장 높은 피해율 적용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임차료 감면
- 지원혜택

피해율	감면율	피해율	감면율
30% ~ 40%미만 40% ~ 50%미만	45% 55%	60% ~ 70%미만 70% ~ 80%미만	80% 95%
50% ~ 60%미만	70%	80%이상	100%

ex) 농가당 평균 약 1,800,000원 감면(감면액 678,000,000×농가수 372호=1,822,580원) ※ '20년 기준) 농가수 372호(피해받은 면적 650ha) 감면액 678백만원

- 임대기간
 -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: 7년
 -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경우 : 3년 이내 연장 가능



3-(1)(1)

과태료 징수 유예 /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

<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> <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4조의3
- ○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

□ 지원 내용

- [과태료 징수유예]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*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
 - * 사법상·소송법상 의무 위반,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제외,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,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
- [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]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·유예
- ※ 연장·유예 기간은 지자체 장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

3-12

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

< 행정안전부 주민과 >

□ 근거 법령

○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

□ 지원 대상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*으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 - *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한파, 폭염, 지진 등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
- 지원혜택 :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
 - ※ 자연재난 피해신고 제출용도 발급 시, 발급 수수료(600원/매) 면제

□ 지원 절차

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(피해자)

 \Rightarrow

발급 수수료 면제 (시군구)

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<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>

□ 근거 법령

○「보훈기금법」제5조,「재해위로금 지급 규정(국가보훈처훈령)」

□ 지원 내용

○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 지급

피해구분		재 해 위 로 금 지 급 기 준	지급액 (만원)	
인명 피해	사망	사망 또는 실종	500	
	부상	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	30	
		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(실종)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0만원씩 부가 지급		
주택 피해	전 파	기둥.벽체.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500	
	반 파	기둥.벽체.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250	
	침 수	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	50	
	※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, 빈집,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,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			
기타 재산 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~80등급인 경우	50	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100등급인 경우	30	
공동 이용 시설 피해	대규모	피해금액이 1,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~80등급인 경우	500	
	소규모	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~90등급인 경우	250	

※ 인명·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·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



3-(4)

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

< 병무청 현역입영과 >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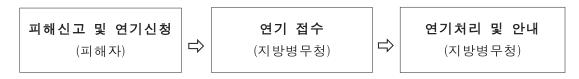
○「병역법」제61조

□ 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: 재난지역 내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
- 지원혜택 : 60일 내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현역병(사회복무 요원 포함) 입영(소집)일자 연기
 - ※ 연기 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.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



3-15

농기계 수리 지원

< 농림축산식품부, 민간 농기계회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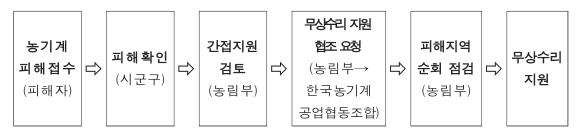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 기준 : 민간자율 지원

□ 지원 내용

○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자

구 분	지 원 기 관
주관기관	농기계회사, 시·군·구 농업부서
협조기관	농림축산식품부, 행정안전부, 시·군·구 재난부서 (>> (농림축산식품부)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 (>> (시·군·구 재난부서) 피해신고 시 안내,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·홍보

□ 지원 절차



※ 수리비 多 발생시, 공인비 없이 부품값만 소유자 부담

3-16

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

< 행정안전부. 삼성전자·LG전자·위니아딤채·위니아전자 >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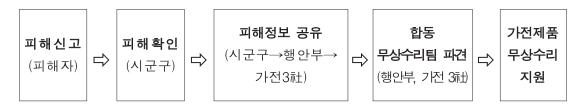
○ 민간자율 지원

□ 지원 대상

○ 자연재해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자 중 수리가 필요한 자

□ 지원 내용

구 분	지 원 기 관		
주관기관	행정안전부, 가전 3社(삼성전자, LG전자, 위니아딤채·위니아전자)		
협조기관	행정안전부, 시·군·구 재난부서 (항정안전부) 가전3社 협의체 운영, 합동무상수리팀 시설·물품·장소 등 지원 (시군구) 합동무상수리팀 시설·물품·장소 등 지원 (가전 3社) 협의체 운영, 수리 인력·장비 파견(지원)		



4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
-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 및 제12조 ※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 일반피해지역 지원 외에 추가 지원

□ 지원 내용

- (대상)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피해자
- (항목) 간접지원 12개 분야 추가지원

<특별재난지역>

- ① 건강보험료 감면
- ③ 고용·산재보험료 경감
- ⑤ 도시가스 요금 감면
- ⑦ 통신요금 감면
- ⑨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
- ① TV수신료 면제

- ②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
- ④ 전기요금 감면
- ⑥ 지역난방요금 감면
- ⑧ 전파사용료 감면
- ⑩ 농지보전부담금 면제
 - ①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

□ 지원 절차

○ 해당 시·군·구에 피해신고, 간접지원 시행 기관에 신청

4-(1)(2)

건강보험료 감면 /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

<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,「보험료 경감고시」제7조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0조, 「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)」

□ 지원 내용

- [건강보험료 경감]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
 - 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6개월 경감(하나만 발생시 3개월)
 - ** 재난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$30\sim50\%$ 경감(월보험료 최대 50% 초과할 수 없음)
- [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]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
 -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(6개월)
 - ※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,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 예외



고용·산재 보험료 경감

<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>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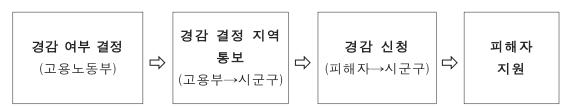
○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제22조의2

□ 지원 대상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의 피해자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지원혜택 : 고용·산재보험료의 30% 경감
 - ex) 고용보험료를 매월 5만원 납부하는 자가 위원회 의결에 따라 1개월간 고용보험료 경감을 받는 경우, 50,000원×1개월×30%=15,000원 경감



4-4(5) 전기요금 감면 / 도시가스 요금 감면

- <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>
- <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전기사업법」제16조,「영업업무지침(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)」
- 「천연가스공급규정(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)」, 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(산업부),

□ 지원 내용

- [전기요금 감면]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등
 - ◇ 멸실된 건축물(주택 등): 1개월분 전기요금 100% 면제
 - ◇ 파손 및 침수 건축물 :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% 경감(단, 주택용은 100% 면제)
 - ◇ 전기요금 납기연장 : 멸실, 파손 및 침수된 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
 - ◇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까지 요금 감면(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),
 - ※ 건축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화 협의하여 3개월까지 추가하여 요금 면제기간을 연장하고,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 50%를 경감할 수 있음
 - ◇ 건축물 멸실,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
 - ◇ 피해복구장소 및 대피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등 전력설비 지원
- **「도시기스 요금 감면」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**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
 -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주택 1,680원
 -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, 반파·침수 6,200원
 - ex) 취사·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주택이 전파된 경우 12.400원 감면

□ 지워 절차



4-6

지역난방요금 감면

<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>

□ 근거 법령

○ 「열공급규정(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)」 제46조

□ 지원 대상

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기계실(열사용시설)의 멸실·파손· 침수로 인하여 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지역난방요금 감면 ※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에 한함
- 지원혜택 : 열 공급을 받지 못한 해당 월의 열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
 - ex)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이 41,500원인 주택의 기계실 침수로 열 사용을 1달간 못한 경우, 41,500원×1개월×100%=41,500원 감면



4-⑦

통신요금 감면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>

□ 근거 법령

○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9조

□ 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무선통신(SKT, KT, LG U+) 요금 감면
- 지원혜택 : 재난등급 1~90등급 피해자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,500원
 - ※ 감면 내용(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)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 - ex) 재난등급 1등급의 피해자가 매월 5만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, 1개월 최대 12,500원 감면
- 근거법령: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


4-89

전파사용료 감면 /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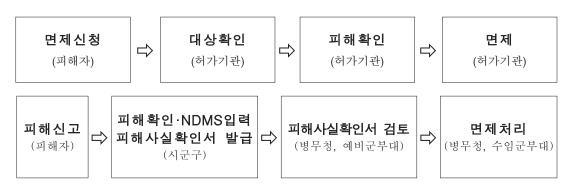
<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> < 국방부 예비전력과, 병무청 동원관리과 >

□ 근거 법령

- 「전파법」제67조,「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」
- 「병역법」제49조 및 제61조「예비군법」제5조「예비군 교육훈련 훈령」제22조

□ 지원 내용

- [전파사용료 면제]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※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제외
 - ► 전파사용료 6개월간 면제(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속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)
 ※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일괄 면제 처리(별도 신청 불필요)
- (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)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
 -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
 -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※ 단, "피해를 입은 예비군"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
 - ▶ 당해연도의 예비군훈련(연도 이월훈련 제외) 면제(국방부, 병무청)



4-(1)(1)

농지보전부담금 면제 / TV수신료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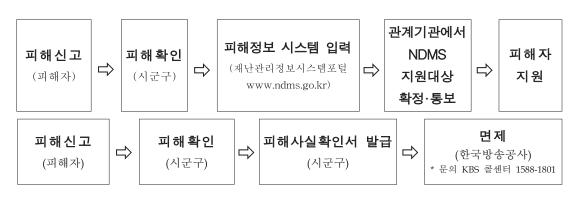
<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> <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>

□ 근거 법령

- ○「농지법」제38조 및「농지법 시행령」제52조
- ○「방송법」제64조,「방송법 시행령」제44조

□ 지원 내용

- **(농지보전부담금 면제) 특별재난지역**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^{*}
 - *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
 - 복구를 위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
 - ※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
- [TV수신료 면제]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수상기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*
 - * 수신료 면제여부. 면제대상 및 기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



4-12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, 예금사업과, 보험기획과 >

□ 근거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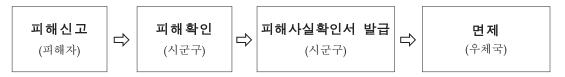
○「우편법」제26조,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제7조

□ 지원 대상

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우체국 고객

□ 지원 내용

- 지원내용 :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고객 대상으로 구호 우편물 무료 배송,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·통장재발생 수수료 면제,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
 - ※ 지역 관할 우체국에서 **일괄 면제 처리(별도 신청 불필요)**
 - ◇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
 - 대한적십자사,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 무료 배송
 - ◇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
 - ◇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
- 지원혜택 :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,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·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, 보험료 및 대출이자 6개월 납입 유예
 - ex)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(통상: 380~7,050원, 소포: 2,700~11,000원), 송금수수료 면제(10만원 이하 600원, 100만원 이하 1,000원, 100만원 초과 3,000원), 통장재발행(2,000원) 면제



5 FAQ(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)

01 사유시설 피해신고 기간은?

- 【A.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시·군·구 (읍·면·동)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.
 - 장기간 여행·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※ 재난 피해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Q2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?

- 【A. 시설피해는 시설물 소재지 해당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제출하고,
 -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.

Q3 피해신고 제외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?

- A. 상가 및 상품, 가재도구, 농기계, 자동차 등 동산과
 - 무허가시설,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, 수산증·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.
 - ※ 주택은 건축 허가·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이고, 무허가·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